

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(2차)

도 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와 25개 시·군이 지원하는 「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」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6.
(재)경기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도내 중소·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경쟁력 제고

□ 지원유형별 개요

- (유형1) 스마트공장 ‘기초’ 구축 (2차 4개 시군)

지원조건				
지원유형	지원대상	최대 지원금액	지원비율	지원규모 및 기간
(유형1) 기초	경기도 4개 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(‘23~’25년 ‘유형1~4’, 수혜기업 지원 불가)	5천만 원 (도30%+시70%)	총 사업비의 70% 이내	12개 기업(과제) / 최대 6개월 (협약일로부터 최대 11월 15일까지)

시·군별 지원 목표					
No.	시·군	목표(개사)	No.	시·군	목표(개사)
1	성남	5	3	동두천	1
2	안성	5	4	오산	1

지원내용 : 스마트공장 ‘기초’ 단계 구축을 위한 설비 및 솔루션	
구분	세부 지원내용
설비	• 스마트공장과 연결되는 자동화 장비 및 제어기, 센서, 비전 시스템 등 지원 ※ 단, 자동화 장비는 생산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,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이 필수
솔루션	• 제품 설계 개선,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소프트웨어 지원 ※ (예) 생산공정관리시스템(POP/MES), 제품수명주기관리시스템(PLM), 기업자원관리시스템(ERP) 등

□ 지원조건

- (신청접수)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,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(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)를 통해 신청 가능
 - 구축장은 경기도내에 위치해야 하며,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.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
 - 동일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더라도 동일 연도 내 중복 신청 불가 하며, 구축장소(종된사업장 포함)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장소별 동시 신청 불가
 - 도입기업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책정 가능하며, 전액 현물로 반영해야 함. 최종선정 시, 원가감리를 위해 인건비 책정 인력은 급여명세서와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함
- (지원 제외대상)
 - 휴 · 폐업중인 기업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유흥 · 향락업, 숙박 · 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-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
 -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
 -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대표자 동일, 지분 관계, 임원 겸직 등으로 사실상 동일한 기업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되는 경우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의 취지에 따름)
- 중복지원 불가: 신청기업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(단, 지원 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 가능)
 -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,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‘지원대상 제외’, ‘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’ 조치할 수 있으며, 향후 사업 참여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2.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, 유의사항

□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평가방식 : 서면평가 및 기술성평가(발표평가)로 진행

□ 평가기준

○ 서면평가

항 목	구 분	배점
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(30)	-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	10
	- 스마트공장 장기적 비전 및 <u>구축 의지</u> *	20
구축 방향, 단계적 구축 계획(30)	-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	15
	- 구축 방향에 따른 단계적 구축 계획	15
금회 구축 세부계획(30)	- 구축 희망 내용의 체계성	15
	- 참여인력, 사업비의 적정성	15
사업의 파급효과 (10)	-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현장 개선 효과	5
	- 제조경쟁력 향상 효과(품질, 생산 납기 등)	5
합 계		100

※ 동점자 발생 시에는 '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', '구축 방향 및 단계적 구축 계획', '금회 구축 세부계획', '사업의 파급효과'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함

* 온라인 교육(3.11.) 참가기업은 '구축 의지' 반영 예정

○ 발표평가

항 목	구 분	배점
기업 역량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(40)	- 기업의 안정성: 종업원 수, 매출액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가?	10
	-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*: 도입기업의 자부담 비율, 교육 수료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가 강한가?	20
	- 공급기업의 전문성: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풍부하고, 관련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? ※ (유형2-3) 솔루션의 확산성 및 저비용 고효율 달성 가능성 포함	10
스마트공장 지원의 적정성(40)	- 데이터 수집 계획의 명확성: 도입기업의 제조공정을 분석하여, 각 공정별 수집해야 할 데이터 종류와 수집 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? ※ (유형2-2) AI 활용가능 데이터 보유 또는 수집 가능 여부	15
	- 솔루션 기능의 적합성: 도입하려는 솔루션이 기업의 업종과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는가? ※ (유형2-2) AI 모델 시나리오 및 검증 계획의 적정성 포함	15
	- 투입 인력의 적정성: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,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였는가?	10
사업의 파급효과 (10)	- 현장 개선 효과: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작업 환경 및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가?	5
	- 제조 경쟁력 강화 효과: 품질 향상, 생산성 증가, 납기 단축 등 스마트공장 도입이 제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?	5
사업비 구성의 적절성(10)	- 예산 적정성: 구축하려는 솔루션과 도입 설비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가?	10
합 계		100

※ 동점자 발생 시에는 '기업역량 및 구축의지', '스마트공장 지원의 적정성', '사업의 파급효과', '사업비 구성의 적절성' 항목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함

* 온라인 교육(3.11.) 참가기업은 '구축 의지' 반영 예정

□ 가점 및 협약 대상 제외 기준

○ (가점) 신청기업이 아래 항목 해당 시, 최대 5점 이내 가점 부여

항목	가점
◦ 5인 이하 기업	3
◦ 여성기업	3
◦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	3
◦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	1

○ (협약 대상 제외) 현장 확인 결과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'부적합'으로 확인될 경우, 협약 대상에서 제외

점검 항목 및 확인 사항		확인여부
사업계획서 대조·확인	◦ 제조공장의 정상 운영 여부 (휴업 또는 폐업 여부 확인)	적/부
	◦ 사업계획서와 현장 공정·설비의 일치 여부	적/부
	◦ 기존 보유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	적/부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에 허위·위·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,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,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,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선정 취소, 협약 해약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,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협약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지원예산 추가 확보 시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가능
- 스마트공장 활용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, 도입기업은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 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하여야 함
 -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(6월·12월) 수기 등록 가능
- 지원기업은 과제 완료 후 수혜 내용, 성과 및 효과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, 경기TP가 실시하는 기업 방문 간담회, 만족도 조사, 성과조사 및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기간 및 제출서류

- (접수기간) 공고일 ~ 4월 17일(금) 18:00까지
- (제출서류) 붙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

구분	제출서류
필수	▪ ('붙임'의 [별지1])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	▪ ('붙임'의 [별지2]) (SW개발비)사업비 산출내역서
	▪ ('붙임'의 [별지3]) 도입·공급기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및 개인정보 동의서
	▪ ('붙임'의 [별지4]) 도입·공급기업 참여 협약서
	▪ 도입기업 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종된사업장은 "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" 추가 제출 * 홈택스(www.hometax.go.kr)- 민원증명-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

구분	제출서류
필수	■ 도입·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* 국세납세증명서: 홈택스-민원증명-국세증명신청-납세증명서 * 지방세납세증명서: 정부24-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-민원출력
	■ 도입기업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(23년~25년, 신청일 기준 25년 재무제표가 안나온 경우 24년까지만 제출) * 국세청 홈택스-민원증명-즉시발급 증명-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
	■ 도입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1인 사업자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*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: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-증명원 신청/발급 *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-증명서 신청/발급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: 국민건강보험공단-민원서비스-서비스찾기-자격득실확인서
	■ 도입기업 중소기업확인서 * 중소기업확인서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-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
해당시	■ 공급기업 중기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'역량진단 결과서'(공급기업 전문성 평가에 반영)
	■ 도입기업 우대가점 증빙서류 * 5인 이하 기업 증빙서류: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1인 사업자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* 여성기업 확인서 *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 *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

□ 신청방법

○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(<https://smart-factory.kr>)

- 홈페이지 회원가입(기업) 및 로그인 → 사업관리 → 과제신청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제출서류 업로드

※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

-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‘공급기업 Pool’에 등록 필요

※ (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) 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- 알림/참여마당 - 공지사항’에서 “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(1077번 게시글)” 참조

-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~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
○ 문의처 (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수정 사원)

- 031-500-3658

- kiox@gtp.or.kr

붙임 2026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‘유형1’ 신청서식 각 1부. 끝.